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8 선고 2022가단211143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2. 2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8. 1.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662,5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62,55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6. 1. 11. D과 대출금액을 7,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8. 1. 5., 이자율을 연 24.1%, 지연배상금률을 연 34.1%, 연체금리를 1개월 이하 연 32.1%, 3개월 이하 연 33.1%, 3개월 초과 연 34.1%, 이자납일일을 매월 5., 상환방법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E은 2017. 11. 1.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F에게 양도하였고,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F는 2017. 12. 7.경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어 F는 2020. 11. 9. 원고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20. 12. 8.경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2022. 2. 3. 현재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아래와 같이 8,662,552원이다(이하 위 대출금채권을 가리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원금 잔액      | 인수 이자 잔액   | 인수 후 이자 잔액 | 합계         |
|------------|------------|------------|------------|
| 3,442,654원 | 3,540,997원 | 1,678,901원 | 8,662,552원 |

다. D의 어머니인 G이 2017. 8. 2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H(각 상속분 1/3)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라. D은 2018. 1. 15. 형제인 피고, H과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또 다른 상속재산인 아산시 I 전 532㎡는 H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 16.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은 위 I 토지에 관하여 각 2018. 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상속재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하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가리켜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마.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2018.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설정계약(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8. 1. 15.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연체이자율 연 34.1% 중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5%(2018. 2. 8.부터는 연 24%, 2021. 7. 7.부터는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금융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이자제한법 제7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은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2016. 3. 3. 법률 제14072호)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제1항은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에 관한 위 제15조 제3항은 위 법률 시행 당시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연체이자율 연 34.1% 중 위 법률 시행일인 2016. 3. 3.부터 또는 위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2017. 8. 29.부터 연 27.9%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8조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위 법률 부칙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에는 위와 같이 준용되는 위 제8조 제2항 본문의 연체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그 밖에 유독 연체이자율에 대하여만 위 법률 부칙 제4조 제1항과 다르게 위 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가 아닌 위 법률 시행일 이전의 법률관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해야 할 법리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역시 위 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과 그 형제인 피고, H 사이에 D의 상속분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2018. 1. 15. D이 위 지분에 관한 권리를 피고, H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되었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위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D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에 판시된 바와 같이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어머니인 G의 사망 후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자신이 D에게 1996. 6. 4.경 7,000,000원, 2004. 11. 4.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총 39,900,000원 합계 46,900,000원을 대여한 적이 있어 그 채권을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지 D이 위 지분에 관한 권리를 자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고, 또한 D은 어머니인 G이 2000. 11. 20.경 아산시 L 전 2,790㎡를 처분할 때 G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을 사전증여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그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D은 물론 피고에게도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D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D이 G으로부터 사전에 위 돈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위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사정이 이렇다면,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2018. 1. 15.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어서 원상회복의 방법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후인 2018.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설정계약(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는 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8,8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액은 22,936,666원(=68,810,000원×상속분 1/3 다만, 원 미만은 버림)이라 할 것이며,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022. 2. 3. 현재 8,662,552원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위 공동담보가액과 위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8,662,5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662,55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별지

부동산 목록

1. 아산시 M 대 420㎡

2. 아산시 M

[도로명주소] 아산시 N

목조 스테이지붕 단층주택 57.85㎡

끝.

